붙임 「상급학교(대학교 등) 미진학 의사 확인서」 서식

※ 상급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참여 불가

상급학교(대학교 등) 미진학 의사 확인서

본인(　　) 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으로서 상급학교*로의 진학 대신 졸업 후 취업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.

*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(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 등)

향후 상급학교 진학에 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상담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습니다.

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단, 지급된 수당 환수, 재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고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